

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 - 43호
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.

2008년 1월 25일  
기술표준원장

##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

### 1. 제정이유

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

### 2. 주요내용

-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기구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적합한 제품의 처리절차 및 방법을 규정
-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정기검사일이 서로 다른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일괄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
-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유지·관리를 위하여 장소별 주무부처인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명시
-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처리 방법을 규정
  -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

3. 시행일 : 이 고시는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##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

제1조(목적) 이 요령은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제품검사”란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영 별표 3 제1호라목 및 제2호라목의 시험·검사원이 외관·치수·성능 및 유해물질 등에 대한 안전성을 시험 및 검사하는 행위를 말한다.
2. “공장심사”란 영 별표 3 제2호라목의 인증심사원이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체 또는 외국의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제조설비·자체검사설비·기술능력 및 생산체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.
3. “자체검사”란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체 또는 외국의 제조업체가 어린이놀이기구별로 원자재·공정 및 제품 등을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행위를 말한다.
4. “동일모델”이란 안전인증이 완료된 어린이놀이기구와 동일한 공장에서 동일한 재료로 생산된 기구로서 법 제6조제1항 및 규칙 제5조에 따른 모델의 구분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.

제3조(안전검사의 절차 및 방법) 안전검사기관은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한 후 법 제2조제3호의 안전검사기준에 따라 시험·검사를 실시한다.

제4조(안전인증의 절차 및 방법)

- ① 안전검사기관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한 후 법 제2조제4호 및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장심사를 실시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제품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제품검사를 실시한다(다만, 공장심사가 면제되거나 제조자가 제품검사를 먼저 하여야 할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인증 신청자가 제공하는 시료로 제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기구의 출고·통관 또는 공장심사 시에 제품이 제출된 시료와 동일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)

제5조(정기검사의 사전신청)

- ①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6조제2항 및 규칙 제7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가 서로 다른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가장 앞서 도래하는 시기에 함께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.
-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의 사전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6조(제조업체의 안전검사기관 변경)

- ①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자·외국제조업자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안전검사기관을 변경요청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검사기관(이하 "인계기관"이라 한다)은 해당 업체에 관한 일체의 기록이하 "관리기록"이라 한다을 업체가 희망하는 안전검사기관(이하 "인수기관"이라 한다)에 인계하여야 한다. 다만, 정기검사 등 진행 중인 업무가 있을 시에는 그 진행 중인 업무가 완료된 후 인계할 수 있다.
- ② 인계기관은 관리기록을 인계한 후 해당 제조업체에 대한 기존의 인증내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인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.
- ③ 인수기관은 관리기록을 인수한 후 해당 업체에게 안전인증서를 새로이 발급하여야 하며, 인수된 관리기록은 유효한 것으로 계속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어린이놀이시설의 번호 부여) 안전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번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.

- 1.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설치검사합격증서의 교부
- 2.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결과통지서의 교부
- 3. 규칙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인증서의 교부

제8조(동일모델확인)

- ① 법 제6조제1항 및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필한 어린이놀이기구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일모델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동일모델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.
  - 1. 제품의 설명서
  - 2.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자가 동일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
-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동일모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여 동일모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일모델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
## 제9조(어린이놀이기구의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)

- ① 제조업자·외국제조업자·대리인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위하여 사전통관 또는 시료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검사를 위한 사전통관(안전인증을 위한 시료확인)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.
  1. 어린이놀이기구의 설명서
  2. 안전검사 신청서(어린이놀이기구 안전검사를 위한 사전통관 신청 시에 한함)
  3. 안전인증 신청서(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을 위한 시료확인 신청 시에 한함)
- ② 안전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통관 또는 시료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
제10조(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·관리 소관부처)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,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·관리를 담당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별표 2와 같다.

## 제11조(부적합 놀이시설의 관리)

- ① 시·도지사는 영 제7조제3항, 제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설치검사, 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부적합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금지 여부를 확인하고, 불법적인 놀이시설의 이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②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불합격 통지를 받은 놀이시설에 대하여 보완, 안전진단, 이용금지 또는 재검사를 결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, 영 제8조제5항에 따른 재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보완·진단 또는 폐쇄를 결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의 수리·교체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보완한 경우 동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다시 안전검사기관으로 부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.

## 제12조(경미한 사항의 보완)

- ①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미달되었으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보완 기한을 정하여 관정을 보류할 수 있다.
- ② 안전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대상 어린이놀이시설이 기한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시 불합격 통지를 하여야 한다.

제13조(안전점검) 영 별표 6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항목 및 주기는 별표 3에 따른다.

제14조(어린이놀이시설의 수리 시 안전관리)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수리하는 경우 수리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"수리 중 사용금지" 라는 표시
2. 수리의 소요시간 표시
3. 수리자명 및 연락처(전화번호 등) 표시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 한다.

※ 관련 안전기준을 열람하시려면 기술표준원 홈페이지( <http://www.ats.go.kr> )의 고시·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